

대구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나3125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2. 11. 17.

판 결 선 고 2022. 12. 22.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소15636 판결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2022. 12.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주식 투자 권유를 받고 피고 명의의 경주축산농협 계좌(계좌번호 1생략)에 2020. 7. 21. 1,000,000원, 2020. 7. 30. 2,000,000원, 2020. 8. 5. 1,500,000원, 2020. 8. 18. 3,000,000원, 2020. 8. 19. 1,5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수익 없이 원금까지 모두 잃었고, 2020년 초겨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위 주식 투자 권유가 사기임을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21. 7. 1. 인터넷뱅킹으로 메리츠 증권 계좌에 1,000,000원을 송금하려다가 계좌번호가 남아 있던 피고 명의의 위 계좌에 잘못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21. 8. 19. 경찰에서 성명 불상자의 주식 투자 권유 사기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수취인이 계좌이체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착오로 피고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9. 15.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호, 판사 이경한, 판사 박소영